

훈 령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운영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07년 1월 1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인천광역시서구훈령 제2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사회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사회복지단체 등으로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 의뢰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지역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자원의 총체적 활용 도모, 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사례관리(Case Management)체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체 의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이 된다.

② 부의장은 협의체 담당국장으로 하며, 자활사업관련 담당을 간사로 한다.

③ 협의체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담당부서 및 공공근로사업주관부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부서의 장
2. 구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3. 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1~2인
4. 수급자 등이 참여하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장
5. 종교, 노동단체 등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기관 등의 장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구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따른 부서 및 기관 간 협조
2.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개선사항
3.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인원 등 조정
4.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5.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의체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촉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기타 보궐위원의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 위원은 협의체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호에 의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 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2. 협의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 불참하였을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의장의 직무) ①협의체 의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협의체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협의체 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고, 협의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 구성원 1/3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의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의 비치) 협의체 간사는 회의록에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협의체의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자회의) ①협의체 실무자회의 참여자 구성은 구의 협의체 실무자, 동 사회복지실무자, 고용안정센터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로 한다.

②실무자회의 개최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체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작업 추진
2. 자활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점검
3. 각 기관의 당해분기 사업계획(사업별 수용가능인원 조정 등)
4.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조사 실시
5. 조건부수급자 의뢰·사후관리에 대한 실무협의

제10조(회의수당) 위원회의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 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 규

인천광역시 서구청운동경기부 운영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2007년 1월 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인천광역시서구예규 제73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운동경기부 운영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

인천광역시 서구청운동경기부 운영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본문 중 “부구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문화공보실”를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공보과”로 하고,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별지제7호서식 중 “인천광역시서구문화공보실”를 “인천광역시서구문화공보과”로 하고, 결재란 중 “실장”을 “과장”으로 하고, “국장”을 신설한다.

별지제7호서식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별지제10호서식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별지제13호서식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낙시어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 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1월 1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4호

낙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어선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낙시어선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업을 신고한자 (선원포함) 및 낙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낙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낙시어선 승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낙시어선의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안전운항을 위하여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지시나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는 음주·가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미끼(떡밥)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치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해상에 분뇨, 폐기물, 유류등의 각종쓰레기를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인명의 안전에 위한 설비를 파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기타 준수사항) 낙시어선업자는 낙시어선 승객에 대하여 출항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1. 낙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운항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낙시승객은 낙시 중 기상악화시 무리한 운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대피를 위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소형낙시어선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낙시어선의 경우에도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에 따라야 한다.(3톤 미만 어선은 의무 착용)

제5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게시)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법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거 서구청장이 고시한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갑판실 외벽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서구청장은 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이 주로 출·입항하는 장소(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연안항)에 낚시 어선업자 및 선원의 준수사항 등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6조(벌칙) 이 고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낚시어선법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처분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 1.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낙시어선의 승선정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가. 게시방법

- (1) 재질 :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 (2) 바탕 : 승선정원 - 백색
승객준수사항 - 노랑색
- (3) 글씨의 크기 및 게시판의 형태
당해 낙시어선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게시판은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나. 게시장소

당해 낙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방법의 예시)

승 선 정 원 ○ ○ 명

- 승 객 준 수 사 항
1. 낙시어선의 승선정원을 초과한 승선 요구행위 금지
 2.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지시 및 주의사항 준수
 3.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준수
(3톤미만 어선은 의무착용)
 4. 기상악화시 무리한 운항 요구 금지
 5.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는 음주·가무 행위 금지
 6.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미끼 사용 금지
 7.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치어 포획 금지
 8. 해상에 각종쓰레기 투기 금지
 9. 인명의 안전에 위한 설비등을 파손하는 행위 금지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조례(안)

2. 제정취지

-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정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사장 배출소음 상시측정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
-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해 생활소음 측정
 - 소음민원 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은 수시로 소음도 측정
-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작업시간의 제한과 2개 이상 장비 동시사용 제한
- 지도점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 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사업자가 소음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

※ 제정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2.3(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환경위생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032)560-4359】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 【☎ 032)560-5922】 에 문의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서]

1.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또는 이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공고기간 : 2007. 1.15 ~ 2007. 1. 25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			
2. 당사자	성 명	배인순 외 6인 (“불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차량번호)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불임” 참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 부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동법 제37조			
6. 의 견 제 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행정과
	주 소	인천시 서구 심곡동 244 (☎ 560-4871, FAX 560-4869)		
	기 한	2007년 1월 25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반차량내역

연 번	당 사 자		위 반 사 항			비 고
	성 명	주소(사용본거지)	차량번호	위반내용	위반법규	
1	배인순	인천시 서구 신현동 158-4 한주타운 1동 301호	인천35러 2509	후등화렌즈착색	제29조 1항	
2	김근선	인천시 서구 가정동559-28 미리내빌라 6동 302호	인천30너 9812	방향등색상상이, 후드업	제29조 1항	
3	강종모	인천시 서구 경서동 727-1 가이아상베르2차아파트 205동 801호	인천32나 3028	번호판 봉인탈락	제10조 3항	
4	김양천	인천시 서구 심곡동 298-19호 서초주택 B03	인천81다 4230	뒤번호판 봉인탈락	제10조 3항	
5	이계철	인천시 서구 마전동 892 하나아파트104동706호	경기67너 2515	후등화렌즈착색, 방향등 청색	제29조 1항	
6	염경호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2차 풍림아이원아파트 202동 602호	경기67머 3772	후미등화렌즈 착색	제29조 1항	
7	이혜경	인천시 서구 불노동 372 퀵스타운길훈아파트301-703	인천31라 4128	후미등 코팅	제29조 1항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55호

신 조 공 인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의 인영을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인신조 사유

- 검단2동 민원서류발급용 인증기 구입

2. 신조공인의 최초 사용일 : 2007. 01. 24

3. 신조공인명 및 인영 : “별첨참조”

신조 공인인영

공인명	규격(cm)	공인인영	비 고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검단2동민원용	2.4cm ² ×2.4cm ²		인증기용공인
검단2동장인/민원전용	2.1cm ² ×2.1cm ²		인증기용공인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67호

신조 및 폐기공인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한 공인의인영을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신조 및 폐기사유

- 재정경제부소관 국유재산관리회계직의 변경임명

2. 신조공인의 최초 사용일 : 2007. 1. 29

3. 신조공인명 및 인영 : “별첨참조”

신조 공인인영

신조 공인명	규격(㎡)	신조 공인인영	비 고
재정경제부일반회계 인천서구수입징수관인	2.0×2.0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관리 회계직의 변경임명
재정경제부일반회계 인천서구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공인)	2.0×2.0		"
재정경제부일반회계 인천서구채권관리관인	2.0×2.0		"
재정경제부일반회계 인천서구재산관리관인	2.0×2.0		"

폐기 공인인영

폐기 공인명	규격(㎠)	폐기 공인인영	비 고
국특회계재산계정재정 경제부소관인천서구 분임세입징수관인	2.0×2.0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관리 회계직의 변경임명
국특회계재산계정재정 경제부소관인천서구 분임세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공인)	2.0×2.0		”
국특회계재산계정재정 경제부소관인천서구 분임채권관리관인	2.0×2.0		”
국특회계재산계정재정 경제부소관인천서구 분임재산관리관인	2.0×2.0		”